

# 情報化促進税制改善(案)建議

세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공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60년대에 처음 컴퓨터가 도입된 우리나라는 '80년대에 들어와 컴퓨터의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산구조나 보급이용 측면에서 유아기 단계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유발과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 실현을 이룩하는 데 동기유발을 위한 세제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어 정보화 관련학계와 산업체의 총의를 수렴하여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화 촉진 세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였다.

본고는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 및 세부 내용임을 밝힌다.....〈편집자 주〉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연구조합

정보문화센터  
한국전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  
(이상 15개단체, 가나다 순)

## 1. 정보화 촉진 세제 개선(안) 건의 주요내용

### 첫째, 情報化社會造成을 위한 租稅特例 節項 新設

- 新設 部門 : 租稅減免規制法 第2章 第20節
- 新設 内容 : 第20節 情報化社會造成을 위한  
租稅特例
- 新設 事由 : 租稅減免規制法의 支援(減免)體  
制는 종전의 產業別(例: 電子工業, 機械工業  
등) 支援에서 機能別(例: 技術開發促進, 海  
外事業擴大 등) 支援으로 改編되었으며 現在  
情報化社會造成은 國家의 最優先 課題로 대  
두되었음.

### 둘째, 情報化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新設

- 新設 部門 : 租稅減免規制法 第72條의 7
- 新設 内容 : 內國人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開  
發業 등 情報處理서비스事業, 컴퓨터를 이용  
한 情報提供事業, 情報通信서비스事業 등을  
영위하는 情報處理事業者에 대해서는 事業開始  
後 5年까지 當該事業에서 發生하는 所得  
金額의 50%를 每年度別로 所得金額에서 挑除

法人稅에서 挑除

※ 情報化投資事例

- 電子計算機 및 電子計算組織網 設置
- 公장 및 事務自動化
- CATV 등 뉴미디어 시설
- 建物의 自動化

○新設 事由 : 初期 情報化投資로는 바로 그 効  
果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動機誘發을 위해 税  
制支援이 必要하며 이미 에너지節約 施設, 公  
害防止 施設 등에 대해서는 税制支援이 되고  
있어 情報化投資에 대한 税制支援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

### 세째, 情報處理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條項 新設

- 新設 部門 : 租稅減免規制法 第72條의 8
- 新設 内容 : 內國人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開  
發業 등 情報處理서비스事業, 컴퓨터를 이용  
한 情報提供事業, 情報通信서비스事業 등을  
영위하는 情報處理事業者에 대해서는 事業開始  
後 5年까지 當該事業에서 發生하는 所得  
金額의 50%를 每年度別로 所得金額에서 挑除

○新設 事由：情報處理產業은 高度의 研究·頭腦集約產業으로 이 部門의 人力이 不足해 事業造成과 영위가 어려운 實情인데 同種의 技術用役事業 등은 稅制支援이 되고 있으나 이 分野의 事業은 新生事業인 關係로 稅制支援이 안되고 있음.

네째, 프로그램開發 및 電子計算組織 運用에 따른 所要費用의 損失準備金 積立制度 新設

- 新設 部門：租稅減免規制法 第72條의 9
- 新設 内容：內國人이 電子計算組織의 소프트웨어開發(需要者의 하자로 인한 再開發 包含), 電子計算組織(시스템화 및 네트워크화)의 統合, 維持·補修 등에 所要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해 當該事業 收入金額의 10%를 損失準備金으로 積立시키고 費用으로 相計시킴.
- 新設 事由：製造業은 技術開發準備金 制度가 있으나 소프트웨어開發事業 등은 開發 또는 保證準備金制度가 없어 適用을 받지 못하고 있음. 日本의 경우는 범용 프로그램開發準備金은 물론 프로그램保證準備金制度가 '70年代 부터 施行되어 왔으며 또 最近에는 시스템 등에 대한 統合 維持補修準備金制度를 마련해 支援을 더 한층 強化시키고 있음.

다섯째, 電子計算機 販賣損失 準備金 積立條項 新設

- 新設 部門：租稅減免規制法 第72條의 10
- 新設 内容：國產 電子計算機를 貸貸 또는 貸貸業을 영위하는 者가 貸貸後 그 製品을 다시 債還했을 때 技術革新, 維持補修 등으로 發生되는 損失에 充當하기 위하여 當該製品 販賣額의 20%를 損失準備金으로 積立시키고 이를 費用으로 相計.
- 新設 事由：우리나라의 情報產業도 종래의 個人用 컴퓨터(PC) 위주에서 점차 小型·中型 등의 컴퓨터事業으로 發展시켜 가고 있는데 이 경우 大部分이 렌탈方式을 採擇하고 있어 렌

탈期間 終了 後 이를 償還할 때 技術革新 등으로 稅法上의 價格과 實際價格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補償하는 것이 必要

日本의 경우 이미 1960年代부터 施行

여섯째, 技術集約產業에 소프트웨어開發業 등 情報處理產業을 追加하고 技術集約 產業의 技術開發準備金의 捐金算入率을 實現化시켜 上向 調整

- 改正 部門：租稅減免規制法 第16條
- 改正 内容：捐金算入率(額)
  - 技術集約產業：收入金額의  $2/100 \rightarrow 5/100$ , 또는  
所得金額의  $30/100 \rightarrow 60/100$
  - 其他 產業：收入金額의  $15/1000 \rightarrow 20/1000$ , 또는  
所得金額의  $20/100 \rightarrow 30/100$
  - 中小企業의 加算額 : 500만원  $\rightarrow$  1,000만원
- 改正 事由
  - 이 規定 制定時('82)에 비해 現在('90)의 技術開發 投資費가 대폭 增額(賣出額 对 技術開發投資額)
    - 電子電機工業 : '82年(1.9%)  $\rightarrow$  '87年(3.9%)
    - 全 産 業 : '82年(0.6%)  $\rightarrow$  '87年(1.6%)
  - 尖端 電子·情報產業의 경우 先進國들의 研究開發 投資는 急速히 增大되어 賣出額(收入額)의 15% 水準에 이르고 있음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最近 高賃金化 등에 對處하기 위해 技術開發 投資가 急增하고 있음.
    - 美國 半導體企業('85年) : 15%
    - 日本 半導體企業('85年) : 15%
    - 우리나라 半導體企業('88年) : 7%
- 新設 部門：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第13條
- 新設 内容：技術集約產業의 範圍
  - 業種 : 情報處理產業
  - 品目 : 컴퓨터프로그램開發, 情報處理事業, 컴퓨터利用 情報 製作·提供事業(Data Base)

등), 情報通信事業(VAN事業 등), 시스템  
統合事業

○新設 事由 : 現行 技術集約產業 範圍에 나와 있는 產業에 비해 情報處理產業의 技術集約度 가 높은데다 現在는 프로그램開發業만 包含하고 있음.

일곱째 : 學校의 研究教育用 컴퓨터, 外部에 委託한 컴퓨터프로그램 開發費 및 情報處理 費用의 附加價值稅 減免條項  
新設

○新設 部門 : 租稅減免規制法 第74條 (附加價值  
稅 免除)

○新設 内容

- 外部에 委託한 컴퓨터프로그램 開發費, 情報處理費用
- 學校機關이 國人에게 教育用으로 購入하는 컴퓨터 등

○新設 事由

- 情報處理事業은 國民福祉社會 實現과 직결되는 事業으로 關聯法에 規定되어 있는 稅制支援條項이 事장화되고 있음.
- 情報化社會와 技術立國을 指向해 나가기 위해 서는 專門技術人力 養成이 우선되어 하는 데 비해 學校가 尖端 教育機資材를 購入하기가 极히 어려워 財政補助까지 要請하는 實情이므로 財政補助보다는 間接稅를 免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여덟째, 投資稅額 控除對象이 되는 特定設備 가운데 產業의 生產性向上 施設 控除對象 企業의 範圍를 擴大해 產業의 情報化를 促進

○改正 및 新設 部門 :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第57條

○改正 및 新設 内容

- 改正 : 中小企業의 生產性向上 施設 등 → 企業의 生產性向上 施設 등
- 新設 : 企業의 情報處理施設 및 情報通信網施設

○改正 및 新設 事由

- 改正事由 : 다른 7個項의 特定設備(例 : 에너지節約施設, 公害防止施設 등)는 全體企業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自動化 등 生產性向上 施設만 對象을 中小企業으로 局限시킴으로써 法體制가 不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貨切上과 高賃金化 등으로 生產性向上 促進이 時急한 課題이므로 이를 全體企業으로 擴大하는 것이 타당함.
- 新設事由 : 企業의 電算化 및 情報通信網施設 또한 事務生產性 向上과 原價節減에 繫要한 것인 데 비해 特定設備에 包含되어 있지 않아 이를 追加.

## 2. 정부화 촉진 세제 개선(안) 건의 세부내용

### [對象稅法 : 租稅減免規制法]

條項	現行	改正 (案)	改正事由
特別減價却費의 計上(法 第14條)	①製造業 또는 鐵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①製造業, 鐵業 또는 資料調查·處理·提供 및 컴퓨터프로그램開發 등 情報處理業을 영위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特別償却 對象業種 追加</li><li>1. 情報處理事業者가 주된 事業施設로서 使用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關聯裝備는 빠른 技術革新으로 쉽게 老朽화</li><li>2. 開發商品인 컴퓨터프로그램 등 關聯製品의 尖端性으로 驟變 없이 새로운 製</li></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大統領令이 정하는事業用資產(施行規則 第5條의 2)	<p>①(省略) [別表2]</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사업별</th> <th>용도별설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39</td> <td>수산업</td> <td>어선</td> </tr> <tr> <td>40</td> <td>기타사업</td> <td>기타의 사업설비</td> </tr> </tbody> </table>	번호	사업별	용도별설비	:	:	:	39	수산업	어선	40	기타사업	기타의 사업설비	<p>(左同) [別表 2]</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사업별</th> <th>용도별설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39</td> <td>수산업</td> <td>어선</td> </tr> <tr> <td>40</td> <td>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 관련서비스업</td> <td>전자계산장치 및 관련</td> </tr> <tr> <td>41</td> <td>기타사업</td> <td>기타의 사업설비</td> </tr> </tbody> </table>	번호	사업별	용도별설비	:	:	:	39	수산업	어선	40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 관련서비스업	전자계산장치 및 관련	41	기타사업	기타의 사업설비	<p>品의 開發이 要請되고 있어 이를 開發, 生產키 위한 施設의迅速한 改替가 必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業用資產에의 追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產”에 電子計算組織 및 關聯裝置가 포함되도록 施行規則上의 規定 補完</li> </ul>
번호	사업별	용도별설비																												
:	:	:																												
39	수산업	어선																												
40	기타사업	기타의 사업설비																												
번호	사업별	용도별설비																												
:	:	:																												
39	수산업	어선																												
40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 관련서비스업	전자계산장치 및 관련																												
41	기타사업	기타의 사업설비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法第16條)	<p>①(省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에 <u>1千分의 15</u>를 곱하여 산출한 金額과 당해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u>100分의 20</u>에 상당하는 金額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의인 產業에 있어서는 당해 課稅年度收入金額에 <u>100分의 2</u>를 곱하여 산출한 金額과 당해 課稅年度所得金額의 <u>100分의 30</u>에 상당하는 金額)중 많은 金額</li> <li>中小企業에 대하여는 第1號의 金額에 <u>500萬 원</u>을 加算한 金額,</li> </ol>	<p>①(省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에 <u>100分의 2</u>를 곱하여 산출한 金額과 당해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u>100分의 30</u>에 상당하는 金額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의인 產業에 있어서는 당해 課稅年度收入金額에 <u>100分의 5</u>를 곱하여 산출한 金額과 당해 課稅年度所得金額의 <u>100分의 60</u>에 상당하는 金額)중 많은 金額</li> <li>中小企業에 대하여는 第1號의 金額에 <u>1,000萬 원</u>을 加算한 金額</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금 산입률 上向調整 事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法條項 制定時('82年)에 비해 現在는 技術開發投資額이 많아져 이를 現實化 (研究開發費의 對賣出額比率比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產業 : 82年 0.6% → 87年 1.6%</li> <li>· 電子電機工業 : 82年 1.9% → 87年 3.9%</li> </ul> </li> <li>2. 端端電子產業體의 境遇 研究開發投資는 先進國들의 企業은 물론 우리나라 企業들도 이미 賣出額의 7%以上을 投資하고 있는 實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半導體企業('85) : 15%</li> <li>· 美國半導體企業('85) : 15%</li> <li>· 韓國半導體企業('88) : 7%</li> </ul> </li> </ol> </li> <li>○ 中小企業의 損金算入額增加事由 法條項制定時('86)보다 中</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받는 教育研究用 品에 대한 贈與 稅 免除 (法律 第67條의15)		<p>한 教育機關이 贈與 받는 教育 研究用品, 實習用機資材 및 이 를 活用키 위한 컴퓨터프로그 램 등 利用技術에 대해서는 당해 用品의 가액에 대한 贈 與稅를 免除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 額을 免除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당해 教育研究用品을 양수 한 教育機關이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減免申 請을 하여야 한다.</p>	<p>稅免除 事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技術立國을 指向하고 우 리나라의 科學技術教育이 研究 및 實習機資材의 부 족으로 人力養成에 있어 質的向上이 어려운 실정</li> <li>技術系 學校 배출인력이 실습교육의 不足으로 就 業後 現場適應力이 어려 우며 이로인해 產業系의 技術向上이 곤란</li> <li>產業界에서는 新入社員 에 대한 새로운 技術教育 에 많은 投資를 하게되고 education能力이 부족한 中小 企業은 自體education도 하지 못하는 실정</li> <li>學校教育事業에 寄附하는 金額은 이 法 (第49條)에 의하여 捐金으로 算入되 도록 規定하고 있어 현품 의 경우에도 이에 相應한 租稅特例가 있어야 할 것 임.</li> <li>電子產業과 같은 尖端產 業은 技術革新이 빨라 2 ~3년이면 改替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이를 效率的 으로 使用해 產學協同으 로 技術人力을 養成해 나 갈 必要性이 높음.</li> </ol>
附加價值稅 免除 (法 第74條)	<p>① 다음 各號의 재화 또는 用 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 值稅를 免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新設)</li> </ol>	<p>①(省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省略)</li> <li>8. 教育法 第81條 規定에 의 한 각급 學校 및 大統領 令으로 정하는 公共技術 教育機關이 教育 및 研究 를 目的으로 內國人生產</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教育機關의 國產教育機資 材에 대한 稅減免 新設事 由</li> <li>1. 技術立國을 위해서는 教 育機關의 教育機資材 擴</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第20節 情報化社會造成을 위한 租稅特例 情報化投資에 대한 租稅特例 (法律 第72條의 7)	(新設)	<p>業體로 부터 購入하는 研究教育用 또는 實習用 機資材와 이에 수반되는 컴퓨터프로그램</p> <p>9. (新設)</p> <p>9. 電子計算組織(컴퓨터시스템)을 利用, 情報를 提供받거나 情報處理를 하기위해 支出하는 費用, 프로그램의 開發用役費 및 製造된 소프트웨어의 購入費</p> <p>① 내國人이 電子計算組織을 利用하여 自動化하거나 또는 情報處理를 効率으로 하기 위해 大統領令으로 정한 部門의 投資에 대해서는 당해부문의 投資金額의 100分의 5(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產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金額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p>	<p>充의 急先務</p> <p>2. 教育機關은 教育機資材 購入能力이 不足</p> <p>3. 輸入自由化時代에 尖端教育機資材產業의 振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情報處理費用, S/W開發用役費, S/W購入 費用에 대한 稅減免 事由</li> <li>1. 情報處理事業은 國民福祉 社會實現과 直結되는 事業</li> <li>2. 未來 尖端 頭腦技術 集約 產業인 情報處理產業의 需要創出 도모</li> <li>3. 情報處理事業 關聯法에 稅制支援事項이 死藏化되고 있음. (S/W開發促進法 第11條 電算網普及擴張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21條)</li> <li>○ 情報化投資의 租稅特例新設事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政治, 經濟, 社會의 급속한 發達에의 對應과 福祉先進 產業社會를 이룩하기위해서는 情報化社會로의 이행이 國家的 과제임.</li> <li>2. 情報化社會로의 이행은 產業社會 各分野에서 일어나야하므로 일부분의 投資에 稅制支援이 절실향.</li> <li>3. 產業高度化를 위해서는 尖端產業의 핵심인 情報產業의 發達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需要造成이 시급함.</li> </ul> </li> <li>※ 情報化投資의 事例 (向後·大統領令으로 制度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電子計算機 및 電子計算組織網 設置</li> <li>- 公장 및 事務의 自動化</li> <li>- CATV 등 뉴미디어 시설</li> <li>- 建物의 自動化</li> </ul> </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情報處理事業에 대한所得控除 (法律 第 72 條의 8)	(新設)	<p>①內國인이 電子計算機를 利用하여 情報를 審集·加工·貯藏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販賣, 提供해 주거나 위탁을 받아 情報를 處理해 주는 事業에 대하여 그 事業을開始한 課稅年度와 그다음 課稅年度의開始日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所得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각 課稅年度의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内國人은 課稅標準申告書와 함께所得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提出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情報處理事業의所得控除 新設事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情報處理事業體가 情報化促進의主體</li> <li>2. 情報處理產業은 尖端技術과 頭腦集約의인 것으로 技術用役事業(現在租稅支援)과 같은 성격임.</li> <li>3. 情報處理產業은 研究集約의이어서 投資에危險負擔이 큼.</li> </ol> </li> </ul>
電子計算組織網의 프로그램開發等의 準備金積立 (法律 第 72 條의 9)	(新設)	<p>①内國人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의 프로그램을 開發(需要者の 하자로인한 재개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과 다른 기기 및 조직을 통합, 유지, 보수를 하기위해 소요되는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프로그램開發準備金을 捐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課稅年度의 프로그램開發事業으로 인한收入金額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의範圍 안에서 당해 課稅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捐金에 算入한다.</p> <p>②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프로그램開發準備金을 捐金으로 계상한 内國인이 프로그램開發에 소요되는費用으로支出한 때에는 그費用은 이미捐金으로 계상한 프로그램開發準備金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捐金에 算入한 프로그램開發準備金으로서 그準備金을捐金에 算入한 課稅年度 종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電子計算組織의 프로그램開發等의 準備金制度 新設理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계산기 및 전자계산조직망의 핵심기술은 S/W임.</li> <li>2. S/W業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고도의 연구집약산업이면서도 技術開發準備金制度가 없음.</li> <li>3. 日本의 경우는 1960年代에 이미 S/W開發準備金制度를 시행하였으며 80年代에는 시스템S/W 및 시스템통합유지 보수準備金制度로發展시켰음.</li> <li>4. 우리나라에도 최근 S/W 및 시스템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支援制度가 시급함.</li> </ol> </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電子計算機 販賣 損失準備金 積立 (法律 第72條의10)	(新設)	<p>이후 4년이 되는날까지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準備金의 殘額은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第13條 第2項의 规定을 준용하여 익금에 算入한다.</p> <p>④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프로그램 開發準備金 계정의 금액이 있는 內國人에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익금에 算入하지 아니한 프로그램 開發準備金 계정의 金額을 익금에 算入한다.</p> <p>1. 당해事業을 폐업한 때</p> <p>2. 法人이 해산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되는 경우에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법인에 당해 프로그램 開發準備金계정의 金額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第1項의 規程을 適用 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開發準備金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①內國人으로서 電子計算機를 貸貸 또는 貸貸業을 영위하는 者가 電子計算機의 技術革新 및 販賣補修 等에서 發生되는 損失에 소요되는 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電子計算機 販賣 損失準備金을 損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課稅年度의 電子計算機販賣 收入金額에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의 範圍안에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電子計算機 販賣損失 準備金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電子計算機 販賣損失 準備金 新設 理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電子計算機는 技術革新이 急速하며 高價의 製品으로 렌탈 等의 販賣가 많으며 이경우 렌탈이 끝나 되돌려 받은 후의 價格이 製造業體에서 보는 가격과 實際價格은 큰 差異가 발생됨.</li> <li>2. 電子計算機는 販賣후에도 계속적인 사용자 측의 하자 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됨.</li> <li>3. 우리나라의 電子計算機產業이 過去 個人用(PC)에</li> </ol> </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控除稅額의 移越 控除 (法律第 89 條)	①第 18 條·第 40 條의 5의 3項 ·第 43 條·第 43 條의 2·第 46 條의 3, 第 71 條·第 72 條·第 72	<p>로 계상한 内國人이 電子計算機 販賣損失에 충당하기 위한 費用으로 支出한 때에는 그 費用은 이미 損金으로 계상한 電子計算機 販賣損失準備金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 金에 算入한 電子計算機 販賣 損失準備金으로서 그 準備金 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 종료일 이후 4年이 경과되는 날 까지 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상계하고 남은 準備金의 殘額은 그 4年이 되는 날 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第13條 第2項의 規定을 준용하여 익 금에 算入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 金에 算入한 電子計算機 販賣 損失準備金 계정의 金額이 있 는 内國人에게 다음 각號의 1 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 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 額計算에 있어서 익금에 算入 하지 아니한 電子計算機 販賣 損失準備金 계정의 金額을 익 금에 산입한다.</p> <p>1.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存續 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당 해 電子計算機 販賣損失準 備金 계정의 金額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p> <p>⑤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内國人은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計算機 販賣損失準備金에 관한 명세서 를 提出하여야 한다.</p> <p>①第 17 條·第 18 條·第 40 條의 5의 3項 3..... .....第 72 條의 2</p>	<p>서 이제 中型으로 發展해 나가야 함.</p> <p>4. 輸入自由化 時代에 世界 巨大企業과 販賣競爭力에 서 이겨나가려면 國產에 대해 稅制金融支援策이 講究되어야 함.</p> <p>5. 日本의 경우 1961年부터 이 制度를 導入, 現在外 지 施行중임.</p> <p>①技術開發 投資는 희망기간 이 長期이고 投資效果가 不確 實하다는 점을 考慮하고 他稅</p>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減免控除稅額의 추정 (法律 第 92 條) 中小企業의 範 圍(施行令第 11 條)	<p>條의 2 또는 第 72 條의 5의 規定에 의하여.....</p> <p>① (省略) 1. (省略) 2. (省略)</p> <p>①法 第 13 條 第 1 項에서 “中 小企業”이라 함은 製造業·鑛 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都 賣業 또는 小賣業(이하 “中 小企業 該當事業”이라 한다)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企業 으로서.....</p> <p>① (省 略) ②法 第 16 條 1項에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技術集約의in 產 業</p>	<p>또는 第 72 條의 5·第 72 條의 7의 規定에 의하여.....</p> <p>2. ....第 72 條의 5, 第 72 條 의 規定에 의하여..... (이하 省略)</p> <p>①法 第 13 條 第 1 項에서 “中 小企業”이라 함은 製造業·鑛 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都 賣業·小賣業·資料 調查·處理· 提供 및 컴퓨터프로그램 開發 등 情報處理業을(이하 “中 小企業 該當事業”이라 한다)주 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企業으 로서.....</p> <p>① (省 略) ②法 第 16 條 1項에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技術集約의in 產 業</p>	<p>額控除의 部分移越控除허용과 衡平을 유지한다는 側面에서 당해년도 技術·人力開發費 支 出費用의 10%控除額에 대해 서도 移越控除을 認定해야 할 것임.</p> <p>②또한 第 72 條의 7로 “情報 化投資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의 新設 要望에 따라 同控除 額에 대해 移越控除가 이루어 지도록 補完, 規定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律第 72 條의 7의 新設 要 請에 따라 의의 追加條項이 本條에 規定되어야 할 것임.</li> <li>○ 國內 情報處理 事業者의 대부분이 資本金 規模가 작고 從業員數가 적은 中 小企業으로서 經營基盤이 취약한 점에 비추어 同業 種의 中小企業 육성은 國 內 S/W技術向上 및 情報產 業 發展에 重要한 관건이 됨. 이에 따라 情報處理 및 關 聯事業을 영위하는 中小事 業者에 投資準備金 損金算 入制度의 適用을 받도록 함으로써 經營基盤 및 技 術開發力を 強化토록 支援 해야 할 것임.</li> <li>○ 情報處理產業을 세분화해 追加</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情報產業은 소프트웨어 뿐 만 아니라 DP, DB產業의 發達이 절실하며,</li> <li>2. 특히 VAN事業과 같은 情 報通信產業의 育成이 必要</li> </ol>								
[별표 4]	<table border="1"> <tr> <th>業種</th> <th>品目</th> </tr> <tr> <td>9. 프로그 램開發 業</td> <td>컴퓨터프로그램</td> </tr> </table>	業種	品目	9. 프로그 램開發 業	컴퓨터프로그램	[별표 4]	<table border="1"> <tr> <th>業種</th> <th>品目</th> </tr> <tr> <td>9. 情報處 理事業</td> <td>           ①컴퓨터 프로그램 開發 ②資料處理(DATA PROCESSING)事業 ③資料 製作·提供 事業(DATA BASE) ④附加價值通信網         </td> </tr> </table>	業種	品目	9. 情報處 理事業	①컴퓨터 프로그램 開發 ②資料處理(DATA PROCESSING)事業 ③資料 製作·提供 事業(DATA BASE) ④附加價值通信網
業種	品目										
9. 프로그 램開發 業	컴퓨터프로그램										
業種	品目										
9. 情報處 理事業	①컴퓨터 프로그램 開發 ②資料處理(DATA PROCESSING)事業 ③資料 製作·提供 事業(DATA BASE) ④附加價值通信網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創業中小企業에 대한租稅特例 (施行令第13條2)	[別表4]技術集約的인 產業의範圍	(VAN)事業 ⑤시스템 統合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技術集約產業의範圍擴大</li> </ul>
		[別表4]技術集約的인 產業의範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퓨터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產業으로 각광받고 있는 DB, VAN事業을 技術集約產業에追加하여 同業種이 創業中小企業에 대한租稅減免의適用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2. 情報產業은 新種核心產業으로浮上하고 있으나 產業基盤이 취약한 同產業의早期育成을 도모하고 아울러事業者の經營安定을 통해 技術水準向上을誘導함.</li> </ol>
技術 및人力開發費에 대한稅額控除 (施行令第14條)	[別表6]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費用 (第14條 第1項 관련)	[別表6]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費用 (第14條 第1項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需要가 급증하고 점차 技術水準이高度化됨에도 불구하고 국내情報化企業 및機關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開發專門業體에 대한委託開發이活性化되지 못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商品流通促進과流通構造確立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프로그램開發의專門化를통한프로그램 技術水準向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li> <li>② 이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開發專門業體를 이용한委託 및共同技術開發費에 대한 產業控除制度를導入하여 컴퓨터利用効率화와 SW產業育成을 도모해야 함</li> </ol>
新技術企業化事業의範圍 (施行令第15條)	①(省略) 1. ~ 4.(省略)	①(左同) 1. ~ 4.(左同) 5.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에의하여登錄된 컴퓨터프로그램 등情報處理의技術을처음으로企業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技術企業化事業의範圍擴大</li> <li>1. 國內情報化를促進하고 소프트웨어技術振興 및 소프트웨어產業發展을積極誘導하기위해서는 새로운ソフト웨어技術의企業화에 대한積極的인稅</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輸出秩序準備 金損失算入의 對象이 되는 外貨獲得事業 의 範圍 (施行令 第19 條)	①(省略) 1. ~ 9.(省略)	①(左同) 1. ~ 9.(左同) 10. <u>有償으로 컴퓨터프로그램</u> <u>을 外國에 提供하거나 外</u> <u>國에서 이를 販賣하는</u> <u>事業</u>	<p>制支援이 必要함</p> <p>① S/W製品, 用役 및 技術의 輸出을 擴大하고 海外 S/W 市場을 積極 開發하기 위 해서는 S/W輸出 支援을 위한 租稅支援制度가 整備, 強化되어야 할 것임.</p> <p>② 이러한 方案의 일환으로 輸出事業의 範圍에 用役을 包含토록 함으로써 情報處理等 技術用役의 海外輸出에 대해 이를 支援할 수 있는 根據를 명확히 함</p> <p>③ 情報處理 用役이 駐韓國際聯合軍 등에 提供되는 경 우 이를 外貨獲得事業으로 명시규정함으로써 輸出損失準備金 制度의 適用을 받도록 함은 물론 이를 통해 情報處理企業의 海外進出을 積極化하는 契機를 마련토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象企業을 中小企業에서 全體企業으로 한 事由</li> </ul>
特定設備의 範圍 (施行令 第57條)	<p>①法 第 71 條 1項에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投資(以下省略)</p> <p>1. (省略) 2. (省略) 3. (省略) 4. (省略) 5. (省略) 6. <u>中小企業의 工程의 改善,</u> <u>施設의 自動化, 老朽施設</u> <u>의 개체, 근로자福止 向上</u> <u>等 生產性向上 施設로서</u> <u>재무부속이 정하는 것.</u> 7. (省略) 8. (省略) 9. (新設)</p>	<p>①(省略)</p> <p>1. (省略) 2. (省略) 3. (省略) 4. (省略) 5. (省略) 6. <u>企業의 工程의 改善, 施設</u> <u>의 自動化, 老朽施設의 개</u> <u>체, 근로자福止向上 等</u> <u>生產性向上 施設로서 재</u> <u>무부속이 정하는 것.</u> 7. (省略) 8. (省略) 9. <u>企業의 情報處理施設 및</u> <u>需給 企業間 또는 同種企業</u> <u>間, 地域內企業間, 컴퓨터</u> <u>및 通信을 利用해 네트워크</u> <u>化한 施設중 재무부속으로</u> <u>정하는 것.</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近 원貨切上, 高賃金化 等으로 企業의 生產性投資 促進이 절실한 課題로 대두.</li> <li>2. 法體系상 他條項 (例: 에너지 利用合理化施設, 公害 防止施設, 災害豫防施設等)은 전부 全產業을 對象 으로 한 것이므로 이 條項도 형평을 고려해 全體企業 을 對象으로 해야 함.</li> <li>○ 特定設備에 情報處理 高度化施設을 新設한 理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產業情報화를 促進시켜 原價節減, 經營革新 等을 기해 나가기 위함.</li> <li>2. 情報處理効率을 極大化 시키기 위하여 企業間 컴퓨터 네트워크 事業을 特別히 振興시켜 주어야 함</li> </ul> </li> </ul>
臨時投資稅額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控除(施行令 57條의 2)	① 内國人 製造業 또는 鑛業 에 直接 使用되는 事業用 機器 裝置를 새로이 取得 하기 위하여 1989年 7月 1 日부터 1990年 6月 30일 까 지 投資한 金額에 대하여 는 法 第 72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課稅 年度에 投資한 金額의 100 分의 3(國產機資材를 使用 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 分의 10)에 상당하는 金額 을 그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① 内國人이 製造業, 鑛業 또 는 컴퓨터프로그램 開發 및 情報處理業에 直接 使 用되는 事業用機器 裝置를 새로이 取得하기 위하여 1989年 7月 1日부터 1991 年 6月 30일 까지 投資한 金 額에 대하여는 法第72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課稅年度에 投資한 金額의 100分의 3(國產機 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그 課稅 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 稅에서 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象期間 연장 事由</li> <li>1. 對象期間 今年6月로 하였 으나 아직까지 景氣가 불 투명한 狀態.</li> <li>2. 더욱이 投資活性化 時點인 今年 6月末까지는 어려울 것임.</li> <li>3. 컴퓨터 등 S/W技術 向上 과 製品開發 活性化를 통 한 S/W供給力 提高를 위 해 情報處理業者도 臨時投 資稅額控除制度의 適用對 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 [對象稅法 : 附加價值稅法]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附加價值稅 免除 의 範圍 (施行令 第35條)	1. (가)~(나) (省略) (다) 設計監督·建築監督· 技術指導·學術用役· 技術用役과 이와 유사 한 用役	1. (가)~(나) (省略) (다) 設計監督·建築監督· 技術指導·學術用役· 技術用役·情報處理· 시스템컨설팅과 이와 유사한 用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技術集約產業인 S/W產業 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事 業體를 구성하고 있는 專 門技術人力이 創出·提供 하는 S/W등 技術製品 내 지는 用役에 대해 租稅惠 澤을 賦與하여 S/W業 從 事者의 創造性과 研究意慾 이 鼓吹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 [對象稅法 : 法人稅法]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國內 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 課 稅 (法律 第55條)	① 第53條에서 “國內源泉所得” 이라 함은 다음 각號에 계기 하는所得을 말한다. 1. ~ 8. (省略)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資產·情報 또는 權利를 國 內에서 使用하거나 그 代價 를 國內에서 支給하는 경우	① 第53條에서 “國內源泉所得” 이라 함은 다음 각號에 계기 하는所得을 말한다. 1. ~ 8. (省略)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資產·情報 또는 權利를 國 내에서 使用하거나 그 代價 를 國내에서 支給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컴퓨터프로그램(S/W)의 輸入에 대해서는 現在 關稅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다시 法 人稅가 부과되는 것은 二重課 稅로서 國內 情報處理業者에 게 二重租稅負擔을 줄 우려가 있음.</li> <li>② 또한 輸入 S/W에 法人稅</li> </ul>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固定資産의 耐用年數 (施行規則 第27條)	<p>의 당해 代價 및 그 資產 · 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p> <p>(가) ..... 텔레비전 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其他 이와 類似한 資產이나 權利</p> <p>(나) (이하 省略) &lt;別表 1&gt; 機械裝置이외의 固定資產 耐用年數表</p>	<p>의 당해 代價 및 그 資產 · 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p> <p>(가) ..... 텔레비전 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其他 이와 類似한 資產이나 權利(컴퓨터프로그램 著作權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나) (이하 省略) &lt;別表 1&gt; 機械裝置이외의 固定資產 耐用年數表</p>	<p>가 부과될 경우 이것이 國內 S/W價格의 上昇을 招來, S/W普及促進을 阻害함으로써 國내 情報化를 遲延시킬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近 電子技術의 急速한 發達로 컴퓨터 및 通信機器의 境遇 2年마다 新製品이 出現하여 3年後에는 殘存價格喪失</li> </ul>								
特別償却 (施行令 第51條)	<table border="1"> <thead> <tr> <th>區分</th> <th>耐用年數</th> </tr> </thead> <tbody> <tr> <td>事務機器 및 通信機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信用카드임프린터</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4</li> <li>· 其他의 것 5</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및 데이타端末裝置 5</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6</li> <li>· 其他의 것 10</li> </ul> </td> </tr> </tbody> </table> <p>①(省略)</p> <p>1. 鐵業 · 製造業 또는 電氣 · 가스業에 直接 使用되는 機械設備로서 .....</p> <p>(이하 省略)</p>	區分	耐用年數	事務機器 및 通信機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信用카드임프린터</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4</li> <li>· 其他의 것 5</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및 데이타端末裝置 5</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6</li> <li>· 其他의 것 10</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區分</th> <th>耐用年數</th> </tr> </thead> <tbody> <tr> <td>事務機器 및 通信機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프린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데이타端末裝置 3</li> <li>· 其他의 것 4</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3</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3</li> <li>· 其他의 것 4</li> </ul> </td> </tr> </tbody> </table> <p>①(左同)</p> <p>1. 鐵業 · 製造業 · 電氣 · 가스業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펌開發 등 情報處理業에 直接 使用되는 機械設備로서 .....</p> <p>(이하 省略)</p>	區分	耐用年數	事務機器 및 通信機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프린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데이타端末裝置 3</li> <li>· 其他의 것 4</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3</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3</li> <li>· 其他의 것 4</li> </ul>	<p>① 情報處理業의 基本裝備인 컴퓨터 및 關職裝置는 빠른 技術革新으로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 이의 迅速한 改替가 必要함.</p> <p>② 특히 情報處理業에서의 컴퓨터 등 裝備稼動時間은 日平均 15.2時間으로 裝備의 過重한 使用에 따른 資金損失이 매우 많아 이의 충분한 補填이 절실한 實情임.</p>
區分	耐用年數										
事務機器 및 通信機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信用카드임프린터</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4</li> <li>· 其他의 것 5</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및 데이타端末裝置 5</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6</li> <li>· 其他의 것 10</li> </ul>										
區分	耐用年數										
事務機器 및 通信機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務用機器 및 컴퓨터</li> <li>· 프린터 3</li> <li>· 個人用컴퓨터 3</li> <li>· 데이타端末裝置 3</li> <li>· 其他의 것 4</li> <li>-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設備</li> <li>· 팩시밀리 3</li> <li>· 電話機 및 電話交換設備 3</li> <li>· 其他의 것 4</li> </ul>										

[對象稅法 : 關稅法]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稅率 (法律 第7條)	①(省略)				①(省略)				① 情報處理企業이 技術開發을 目的으로 導入하는 S/W에 대해 높은 稅率의 關稅가 부과됨으로써 零細한 情報處理企業의 技術開發에 따른 資金負擔을 높이는 要因이 되고 있음. ② S/W輸入에 대한 높은 稅率의 關稅 부과는 결국 國내에 流通되는 S/W價格을 높이게 됨으로써 S/Wutilization促進을 통한 컴퓨터utilization度提高 및 情報化 促進을 阻害케 됨.
	品目番號 (HS NO)	品名	基本關稅率 '90 '91		品目番號 (HS NO)	品名	基本關稅率 '90 '91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中略)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中略)			
8524.21.20.00	電子計算組織의 資料를 記錄한 것	13	11		8524.21.20.00	電子計算組織의 資料를 記錄한 것	13	5	
8524.22.20.00	(中略) "				8524.22.20.00	(中略) "			
8524.23.91.10	(中略) "				8524.23.91.10	(中略) "			
8524.90.20.00	(中略) "(이하省略)"				8524.90.20.00	(中略) "(이하省略)"			
防衛產業用品 減免 (法律 第28條의3)	①(省略) ②(省略)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減免를 받은 物品은 輸入免許日로 부터 5년의 範圍안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期間內에는 第1項 各號의 用途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稅關長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左同) ②(左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減免를 받은 物品은 輸入免許日로 부터 5년의 範圍안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期間內에는 第1項 各號의 用途밖에 사용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稅關長의 承認을 얻은 경우와 教育法第 81 條 規定에 의한 각급 학교의 教育研究用으로 무상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教育研究用으로 無償讓渡時例外로 한 事由 1. 技術立國을 指向하고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教育이 研究 및 實習機資材의 부족으로 人力養成에 있어 質的向上이 어려운 실정 2. 技術系 學校 배출인력이 實習교육의 不足으로 就業後 現場適應力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產業界의 技術向上이 곤란 3. 產業界에서는 新入社員에 대한 새로운 技術教育에 많은 投資를 하게되고 教育能力이 부족한 中小企業은 自體教育도 하지 못하는 실정 4. 產業界에서 學校에 遊休施設을 教育研究用으로 支援코자 해도 關稅分割 納付 承認品目으로 一定期間(5年)內에는 無償讓度가 어려움
關稅의 分割納付 (法律 第36條)	①(省略) ②(省略)  .				①(左同) ②(左同)  .				

條項	現行	改正(案)	改正事由
	<p>⑧(省略)          ⑨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關稅의 全額을 즉시 徵收한다.</p> <p>1. 關稅의 分割納付 承認을 얻은 物品을 第 1 項에 정한 期間內에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用途外에 使用할者에게 양도 한 때.</p> <p>2. (省略)</p>	<p>⑧(左同)          ⑨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關稅의 全額을 즉시 徵收한다.</p> <p>1. 關稅의 分割納付 承認을 얻은 物品을 第 1 項에 정한 期間內에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用途外에 使用할者에게 양도 한 때, 다만 教育法 第 81 條 規定에 의한 각급 학교의 教育研究用으로 무상 양도한 때에는例外로 한다.</p> <p>2. (左同)</p>	<p>5. 電子產業과 같은 尖端產業은 技術革新이 빨라 2~3年이면 改替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이를 效率의 으로 사용해 產學協同으로 技術人力을 養成해 나갈 必要性이 높음.</p> <p>6. 學術研究用品에 대해서 이미 關稅法으로 減免(28條의 5)을 해주고 있어 減免받은 物품을 無償讓渡時 추가적인 制裁의 필요성이 없음.</p>

## EIAK '91 (영문종합 카탈로그) 발간계획 안내

본회에서는 국내 전자공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부터 매년 1회씩 「EIAK(舊 Korea Electronics Catalog, 영문종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세계 각국의 유명 Buyer, 해외무역관, 한국전자전 및 해외전자전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국내의 유일한 전자전기 분야의 전문종합 카탈로그로서 그 권위와 정평이 미·일·서구 등 해외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동 책자는, 금년에도 전자전기제품을 총망라하여 제작, 배포함으로써 해외홍보 및 거래상담 등의 용도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주종제품과 신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 각국에 소개, 홍보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 가. 基本體制

(1) 판형 : 국내판(가로 210×세로 280mm), 반양장

(2) 부수·면수 : 10,000부, 500면 내외

(3) 발간일자 : 1990. 8. 31

### 나. 揭載申請要領

(1) 광고게재신청서 제출 기한( 1990. 7. 20 )

(2) 광고게재원고(Film) 제출 기한 : 1990. 7. 31

(3) 부록Directory원고 제출 기한 : 1990. 7. 10

### 다. 제출 및 문의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1층)  
본회 조사부 자료과

TEL : 직) 554-4271, 교) 553-0941/7(51)

FAX : 555-6195, 563-7339